

#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특성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의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중심의 가구 형태 변화와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재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여 향후 노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발견율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시설학대의 예방과 전문적 개입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인력 확보, 자기방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화된 자기방임 사례 관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모습은 2000년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다. 노인의 삶의 모습 변화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그리고 노인의 부양과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 형태는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998년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48.6%였으나 2014년에는 28.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sup>1)</sup>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199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노인의 대다수가 자녀와 거주하기보다는 혼자서 또는 노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 또한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89.9%(1998년)에서 31.7%(2014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sup>2)</sup> 2000년 이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후연금제도의 안정화 등은 노인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대표적 원인이기도 하며, 국민들의 생각과 모습의 변화에 대응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재정 등을 포함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2015.12.), 이를 통해 향후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발전이 예상된다. 정책뿐 아니라 노인학대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다.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2.9%(2005년)에서 85.8%(2015년)로 감소하였으며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등에서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학대는 70.5%(2005년)에서 40.4%(2015년)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학대 행태에서도 자기방임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노인학대의 정책 현황과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

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노인학대 대응정책 현황

### 가. 노인학대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대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또한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노인복지법 개정(2015.12.30.)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에서는 노인학대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된다. 반면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의 5에 의한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sup>3)</sup>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2) 국가통계포털, 1998, 2014년도 사회조사,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http://kosis.kr>에서 2016. 8. 05. 인출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에 의하면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sup>4)</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로 정의된다. '노인학대'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차이는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며,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노인학대 중 처벌적 요소를 갖고 있는 혐의의 학대로서 범죄 성립의 조건인 가해자와 피해자, 행위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노인학대와 유사한 아동학대는 이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와 별개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노인복지법 내에서 노인학대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하였다. 노인학대에서 늦게나마 범죄로서의 학대에 대한 법 조항을 제정할 것은 학대에 더욱 강력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나. 노인학대의 유형 분류

노인학대 대응 정책을 실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지침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학대 행태적 분류와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방식으로 유형화된다.<sup>5)</sup>

노인학대 행태에 따른 유형화는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분류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정의에서는 학대의 행위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자기방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침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행태에서 자기방임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 의한 노인학대 대응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민간에 의해 서비스가

4)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 등의 처사상)(상해에 이르러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처사),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55조의4 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 지침.

제공되던 시점부터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입한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침에 의한 자기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대는 타인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행위라고 볼 때, 자기방임은 적합한 범주는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학대 대응정책에서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에 포함하였다는 것은 ‘노인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는 학대를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기타학대로 구분한다. 가정학대는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학대’로 정의된다.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로 정의되며, 기타는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정의된다.

#### 다. 노인학대 대응정책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 예방 정책과 노인학대 개입 정책으로 분류된다. 노인학대 예방 정책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사업과 흥

보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교육사업에서는 노인, 일반인, 신고의무자, 관련 기관 종사자, 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효행, 노인 자살 예방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홍보사업은 노인 및 부양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개념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학대 개입 정책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 관리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한다.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신고 접수-현장 조사 및 사정-사례 판정 및 조치-서비스 제공-사례 평가 및 사후 관리의 5단계로 관리된다. 시설학대 중 노인복지생활시설 학대 사례 관리를 타 학대와 별도로 제시하여 시설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 지침의 시설학대범위를 노인복지생활시설로 제시함으로써 노인복지생활시설 이외의 병원이나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학대 사례 관리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상태이다.

노인복지법 개정(2015.12.29.)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의무와 보호 강화, 노인학대 개입의 용이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예방과 홍보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2016년 말(12.30.)까지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대응의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다.

표 1. 노인복지법 개정(2015.12.29.) 노인학대 관련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조항	시행일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8개 → 14개 직군: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	제39조의6	2016. 12. 3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강화 (300만 원→500만 원)	제61조의2	2016. 12. 30.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 보호 및 비밀 누설 방지 위한 벌칙 강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제57조	2016. 12. 30.
학대 개입 용이성·전문성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근거 마련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 수행)	제39조의7	2016. 12. 30.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조사 절차 (조사 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을 고지)	제39조의11 제3항	2016. 6. 30.
	사법경찰관리의 노인학대 통보 (노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직무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제39조의15	2016. 6. 30.
	금지행위 처벌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호를 위한 벌칙 강화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제55조의3	2016. 12. 30.
	중앙 및 지역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중앙: 노인학대 분쟁 사례 조정,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	제39조의5 제1항 제8호· 제2항 제8호	2015. 12. 29.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권고	제39조의16	2015. 12. 29.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동안 노인복지시설 등)	제39조의17	2016. 12. 30.
	노인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종사자의 위반 사실 공표 (공표 내용: 위반 행위, 해당 법인, 시설명, 시설 대표 등)	제39조의18	2016. 12. 30.
	상습범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가중처벌 (노인학대 관련 금지행위 시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제59조의2	2016. 12. 30.
예방·홍보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 제정(매년 6월 15일)	제6조 제4항	2016. 12. 30.
	노인학대 관련 홍보 영상의 제작·배포·송출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 방법 등)	제6조의2	2016. 12. 3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6.15.),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현황

노인학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개입 등 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곳 있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28곳(2016년) 운영 중이며, 시·도별로 1~3개가 설치되어 있다. 개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일반적으로 직원 7~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3. 노인학대 실태 및 특성의 변화

노인학대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몇몇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추정되는 노인의 학대 경험률은 9.9~14.6%로 나타난다. 학대행위 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방임,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2. 우리나라의 노인학대(폭력) 경험률<sup>1)</sup>

(단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학대 경험률
2008 <sup>2)</sup>	0.6	7.7	-	1.3	4.5	-	-	10.2
2009 <sup>3)</sup>	0.6	11.0	0.1	0.7	3.7	1.7	0.5	14.6
2010 <sup>4)</sup>	1.0	10.1	-	1.2	0.8	-	-	10.3
2011 <sup>2)</sup>	0.5	9.4	-	1.5	3.9	-	-	12.7
2013 <sup>4)</sup>	2.2	9.0	-	1.2	2.5	-	-	10.0
2014 <sup>2)</sup>	0.2	7.3	-	0.3	4.3	-	-	9.9

주: 1)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학대 경험'을 의미함.  
 자료: 2) 보건복지부, 각 연도(2008, 2011, 2014년) 노인 실태조사 자료.  
 3) 보건복지부,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4) 여성가족부, 각 연도(2010,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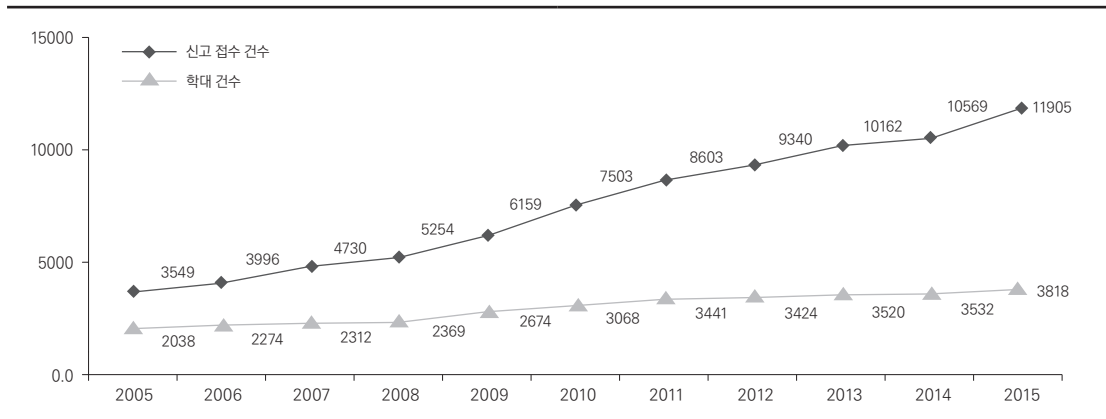


다양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노인학대 경험률은 10% 내외지만, 실제 노인학대로 신고되고 판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sup>6)</sup>에 의하면 2015년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1만 1905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0.05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학대 공식 통계

가 산출된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3549건에서 1만 190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과거 노인학대는 개인의 가정사로 인식되어 신고되지 않거나, 자녀나 가족에 의한 학대인 경우 피해 노인이 밝히기를 꺼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었으나, 점차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사례 수(2005~2015년)

(단위: 건)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판정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노인학대행위 특성, 발생장소, 피해 노인과 행위자 간의 관계 등에서도 노인학대의 특성은 변화하고 있다.

2015년 노인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 중 가장 큰 비율은 정서적 학대로 37.9%이며 신체적 학대 25.9%, 방임 14.9%, 자기방임 10.1%, 경제적

학대 8.8%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학대 신고 유형의 정서적 학대 43.1%, 방임 23.4%, 신체적 학대 19.1%와 비교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감소하였으나 신체적 학대는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노인학대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방임의 증가로 2005년 1.0%에서 2015년 10.1%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전문적 대응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며, 이곳에서는 매년 신고된 노인학대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발간함.

표 3. 노인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 유형별 분포(2005~2015년)

(단위: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005	19.1	43.1	0.5	12.2	23.4	1.0	0.6	100.0
2006	20.9	42.4	0.4	11.3	22.2	1.7	1.2	100.0
2007	19.4	41.4	0.3	11.1	24.7	2.1	0.9	100.0
2008	22.4	40.1	0.5	11.4	21.5	3.0	1.0	100.0
2009	24.6	40.4	0.8	12.1	17.6	2.8	1.8	100.0
2010	25.7	39.0	0.8	11.3	17.6	3.9	1.8	100.0
2011	24.6	40.0	1.3	10.5	18.0	4.1	1.5	100.0
2012	23.8	38.3	1.1	9.7	18.7	7.1	1.3	100.0
2013	24.5	38.3	1.5	9.0	18.6	6.4	1.5	100.0
2014	24.7	37.6	2.3	9.0	17.0	8.0	1.4	100.0
2015	25.9	37.9	1.7	8.8	14.9	10.1	0.8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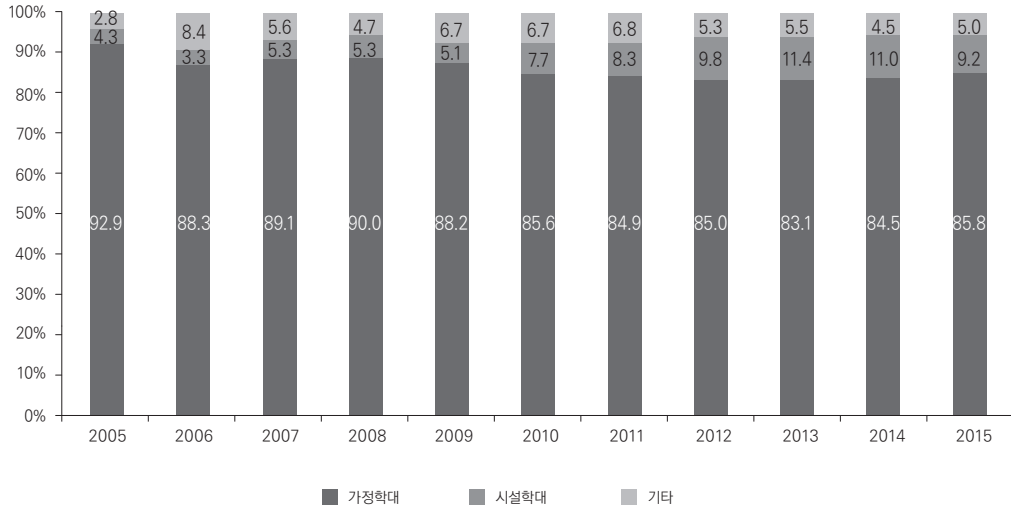
노인학대의 발생 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2015년 가정 내 학대는 전체 신고학대 중 85.8%로 높게 나타나지만 2005년 92.9%와 비교할 때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노인 복지생활시설 또는 병원 등의 시설학대는 2005

년 4.3%였으나 2015년 9.2%로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아졌고, 최근 요양병원 등을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나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 노인학대 발생 장소별 현황(노인보호전문기관 판정 사례: 2005~2015년)

(단위: %)



주: 시설학대는 양로시설, 요양시설 및 병원 등에서 발생한 학대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노인학대 발생 장소와 학대행위의 특성 변화가 반영되어 노인학대행위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설 직원에 의한 노인학대는 2.9%에서 9.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기방임의 증가로 인해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비율이 1.0%(2005년)에서 14.7%(2015년)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와 노인에 대한 부양의

식 변화를 반영하듯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학대는 크게 감소한 반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6.5%에서 15.4%로 증가한 특성을 보인다. 아들, 며느리와의 동거 형태 감소, 며느리에 의한 직접적 수발 감소 등은 아들 부부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을 감소시켰다. 반면 딸에 의한 학대 비율이 유지되는 것은 최근 아들, 딸 구분 없이 거주하거나 딸에 의한 보호 비율이 높기<sup>7)</sup> 때문으로 해석된다.

7)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노인의 수발자를 살펴보면 배우자(37.7%), 아들(25.2%), 딸(20.6%), 며느리(12.4%) 순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표 4. 학대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2005~2015년)

(단위: %)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친족				시설 직원	기타
			소계	아들	며느리	딸		
2005	1.0	6.5	82.2	51.2	19.3	11.7	2.9	7.4
2006	2.5	7.3	77.7	55.5	11.8	10.4	1.1	11.4
2007	3.0	7.6	77.4	53.1	12.4	11.9	2.2	9.8
2008	4.3	7.7	74.6	51.9	10.6	12.1	2.3	11.1
2009	4.2	9.2	72.0	51.1	9.6	11.3	2.1	12.5
2010	5.6	10.0	69.5	48.4	8.4	12.7	3.3	11.6
2011	5.8	12.4	66.7	46.0	6.8	13.9	4.6	10.5
2012	10.2	12.8	59.6	41.2	6.4	12.0	6.9	10.5
2013	9.3	13.7	59.3	40.3	6.0	13.0	7.3	10.4
2014	11.9	15.2	55.8	38.8	4.7	12.3	7.4	9.7
2015	14.7	15.4	51.1	36.1	4.3	10.7	9.0	9.8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4.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개선 과제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매우 큰 성장을 이루었다. 2015년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의 신고 강화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 시설학대 개입 강화를 위한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다. 개정 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노인학대 대응은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정책 대응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학대의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학대 신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낮은 신고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현재 신고 중심의 접근에서 발굴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의 분석과 같이 노인학대의 특성은 외부로 드러나기보다는 은폐되기 쉬우며, 특히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 노인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 현재 신고의무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이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 및 비금전의 긍정적 인센티브 제도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시설학대에 대한 신뢰성 높은 판단과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 최근 노인학대의 특성에 따르면 시설학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시설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학대는 행위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이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어려우며, 시설학대 발생 시 피해 범위가 클 가능성이 높으며, 학대로 판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뢰성과 조치의 적합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개인학대에 비해 더욱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학대에 대한 대응에서는 더욱 전문적인 개입과 신뢰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설학대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시설학대 대응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명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노인학대와 관련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할하는

지역이 넓어 상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인프라 규모와 인력 현황으로는 시설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시설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학대에 대한 시설 임직원의 인식 개선과 학대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수정을 위한 정기적인 시설 인권 실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학대의 변화 특성 중 최근 증가하는 자기방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자기방임에 대한 학대 관점에서의 고찰과 개입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자기방임 노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관점에서의 자기방임 정의 및 내용, 판정 기준, 그리고 개입 방법 등이 구체적인 매뉴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자기방임은 기존의 타인에 의한 노인학대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시설학대와 같이 일반적인 학대 유형의 사례 관리와는 별도의 사례 관리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